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1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4,7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7백만원이 증액된 163,617백만원, 특별회계가 2,312백만원이 감액되어 41,167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3,871백만원, 세외수입 12,235백만원, 지방교부세 92,499백만원, 재정보전금 3,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2,01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53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6,634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50,075백만원, 사업예산 100,850백만원, 채무상환 5,434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7,25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415백만원, 사업예산 36,124백만원, 채무상환 1,56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60백만원 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 관 · 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2007년 【본예산】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총 계	204,783,612	205,158,943	△375,331
일 반 회 계	163,616,500	161,680,116	1,936,384
특 별 회 계	41,167,112	43,478,827	△2,311,715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970,313	7,467,370	12,502,943
기 타 특 별 회 계	21,196,799	36,011,457	△14,814,658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0,000	547,001	△487,001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594,258	394,991	199,267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특 별 회 계	444,228	444,228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72,395	0	72,395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19,073,895	31,563,299	△12,489,404
공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952,023	3,061,938	△2,109,915

